

October 2, 2019

Legal Update

법무법인 세종 베트남 뉴스레터 VOL. 2

CONTENTS

Legal Update

부패방지법 개정 - 베트남 '김영란법' 될까	02
한 필지에 등기된 복수 건물의 분리매각 가능성	05
EU와 베트남 FTA 체결, 우리 기업에의 영향은?	07
Condotel 투자 : Green Light vs. Red Light?	09
상장회사 주식 인수 시의 공개매수(Tender offer)	11
해외직접투자 외환관리 규정 강화	13
Issuance of Bonds on the International Market	15

News

[인사이동] 김철환 관세전문위원 하노이 상주	17
--------------------------	----

Legal Update

부패방지법 개정 - 베트남 ‘김영란법’ 될까

❖ 베트남 정부의 부패 척결 의지¹

-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발표에 따르면 조사 대상국 180개국 중 베트남은 2017년 107위, 2018년 117위를 기록하며 높은 부패지수를 기록
- 베트남은 지난 2016년 5월 응우옌 쑤언 폭 총리 취임 이래 줄곧 부패 척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임
- 2019년 4월에는 빈그룹 창업주의 친동생이 일명 ‘통신 부패 스캔들’에 휘말렸고, 2018년 7월에는 민간 유료 TV 서비스 업체인 AVG의 모비폰 매각과 관련해 뇌물 혐의로 AVG의 전 회장을 구속하기도 함

❖ 베트남 부패방지법 개정

- 2018년 12월, 제14대 국회 6차회의에서 채택
- 2018년 11월 국회에서 통과, 2019년 7월 1일부터 발효
- 개정 부패방지법의 일부 규정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포함한 시행령(Decree No.59/2019/ND-CP)이 2019년 8월 15일에 발효

❖ 베트남 부패방지 관련 주요 개정 사항

- 권한부여자 범위 확대
 - 임명 선임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권한을 부여받은 자 ➡ 계약에 따른 고용인까지 모두 포함
 - 개정 부패방지법에 따른 권한부여자의 범위

- 공무원 또는 공기업에서 근무하는 자
- 군 관계자
- 정부 투자 기업의 대표자
- 기관의 경영진
- 해당 업무를 수행하도록 권한과 의무를 위임받은 자

1. 2019. 8. 22자 한국경제 기사, “[박동휘의 베트남은 지금] 반부패 칼 빼든 베트남”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1908220947i>

- 금지되는 행위의 범위 확대

- 횡령, 뇌물 수수 등 기존 부패 행위 ➡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복 등 포함
- 업무와 관련하여 금전, 금품 또는 물질적 이득을 수취하는 행위 ➡ 업무 관련성이 있다면 형태를 불문하고 모든 금품의 직·간접적 수령을 금지

- ‘권한부여자’의 선물(gift) 수수

- 선물을 받은 권한부여자는 해당 선물을 거절 또는 선물 공여자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거절 또는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금품의 성격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환가하여 국고(정부)에 반환한 후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동 시행령 제24조 내지 제28조).
- 만약 이를 위반하는 경우 부패 행위의 심각성에 따라 징계, 행정 벌과금 등의 행정벌을 부과(동 시행령 제76조 내지 제78조)
- 다만 위 시행령은 권한부여자의 책임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권한부여자가 아닌 개인 또는 법인의 선물 공여 관련 죄책에 관해서는 규정 없음

- 부패 행위에 관한 컴플라이언스 조치 강화 (정부/비정부 기관 불문)

- 반부패 교육 등 부패 방지를 위한 조치를 이행할 것
- 기관 내 부패 행위를 조사할 것
- 부패 행위 발견시 즉시 당국에 정보를 제공하고 보고할 것

- 부패 행위 보고 범위 확대

-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이해 충돌을 안 경우 관련 기관에 신고 ➡ 알았어야 하는 경우에도 신고 의무 부담

- 기타 부패 행위 방지 방안 확충

- 이해충돌 상황이 업무 수행의 충분성, 객관성 및 진실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해당 인원을 업무 수행에서 배제, 또는 교체 가능
- 정부/군/경찰 공무원, 정부 소유/투자 기업의 대표자, 인민 위원회 위원 등에게 자산, 수익의 현황 변경 사항 신고 의무 부과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들에게도 적용)

❖ 시사점

- 기존 부패 행위는 형법 등에 의해서도 처벌되었으나, 개정 부패방지법에서는 부패 행위의 주체 대상의 범위를 확장하여 죄책의 저변을 확대함
- 뿌리깊은 관행과 새로운 규제 사이에서 공무원과 민간 기업의 혼란 예상
- 다만 베트남이 2020년 OECD 가입을 목표로 바젤 II 도입, ILO 협약 준수 등 글로벌스탠다드를 따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므로 국가 청렴도를 제고하기 위한 엄격한 규제가 예상됨

Legal Update

한 필지에 등기된 복수 건물의 분리매각 가능성

❖ 한 필지에 등기된 여러 동 중 일부 동의 매각

- 대주가 한 필지에 지은 차주 소유 건물들 중 한 건물에만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주가 기한 이익을 상실한 때(소위 Event of Default 발생) 위 건물만을 매각하여 저당권을 실행하는 경우에 문제됨
- 대주의 신속한 exit, 투자금 회수 가능성과 관련하여 주목할 필요 있음

❖ 분리 매각 가능성 및 분필 필요성

- 위 상황을 정확하게 규정하는 법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임
- 다만 임차 토지의 일부에 위치한 지상 건물을 매매하는 경우, 매수인이 정부와 체결하는 신규 임대차 계약 이전에 필지 분할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Decree 규정이 있음
- 하노이의 경우, 인민위원회는 2017년 6월 12일자 결정으로 특정 필지 중 일부에 건축된 지상 건물을 매매하는 경우 해당 건물이 위치한 필지를 분할하여 매도하도록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
- 관련 사례 및 공무원의 확인에 따르면 분리 매각 자체는 가능하되 분필 절차를 선행해야 하는 것으로 보임

❖ 구체적인 절차

- 위 경우 분리 매각을 위한 분필 절차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표와 같이 진행됨

구분	절차	타임라인
1	매도인이 토지등록소에 지적 측량 요청	N/A
2	매도인이 LURC 수정 신청서 제출	N/A
3	자연환경국에서 해당 건물의 매매 관련 조건을 검토 및 심사	위 신청서 접수로부터 15영업일 이내
4	자연환경국에서 해당 건물의 매매와 관련한 의견을 하노이 인민위원회에 제출	자연환경국이 위 신청서가 절차적으로 적법함을 확인한 이후 8영업일 이내
	자연환경국에서 분필 절차 진행	15일 소요
5	하노이 인민위원회에서 결정 발급	자연환경국의 의견 접수 후 2영업일 이내
6	관할 세무국에서 매수인을 위한 임차료 결정	
7	매수인과 정부의 신규임대차계약 체결	임차료 결정 통지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8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각 LURC 발급	관련 서류 제출일로부터 14영업일 이내

❖ 시사점

- 차주의 협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대주가 차주의 모든 부동산이 아니라 일부 부동산에만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가 발생
- 위 부동산이 모두 한 필지에 위치하는 경우, 분리 매각의 가능성 및 절차에 관한 쟁점은 대주의 투자금 회수 가능성과 적시성에 대단히 중요한 문제임
- 베트남법이 위 쟁점을 명확히 판단하고 있지는 않으나, 관련 하위 규정, 사례 및 공무원의 구두 의견을 종합하면 분리 매각은 가능함
- 다만 매도인이 주체가 되어 관할기관과의 협의 하에 분필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매도인의 협조가 필수적이고, 일반적인 부동산 매각 절차보다 장기간 소요
- 따라서 대주의 리스크 헤지 및 투자금 회수의 안정성을 위하여 가급적 단일 필지 위에 있는 부동산의 일부에는 저당권을 설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Legal Upda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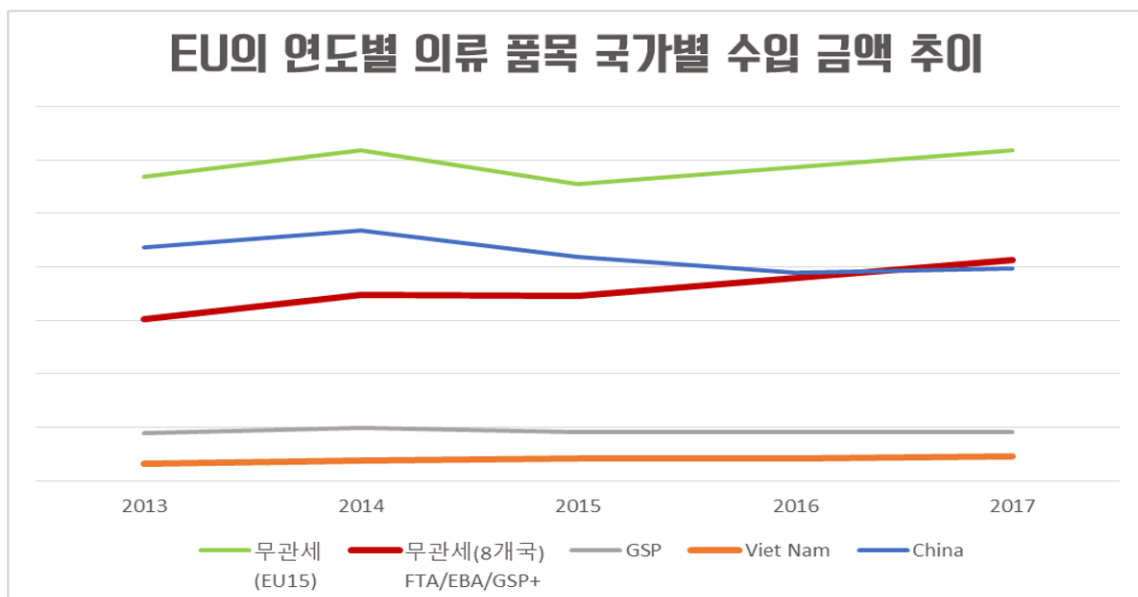
EU와 베트남 FTA 체결, 우리 기업에의 영향은?

❖ EV-FTA HISTORY

- EU는 베트남의 제2위 수출시장(2018년 對EU 수출규모 419억 달러)
- 2012년 6월 FTA 협상 체결, 2015년 8월 협상 타결
- 2019년 6월 30일 양측이 FTA에 서명함으로써 정식 체결, 2020년 비준 예상
- 협상 타결부터 서명까지 4년이라는 기간이 걸린 것은 베트남이 노동 및 인권에 관한 EU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데 긴 시간이 걸렸기 때문

❖ EVFTA발효시 베트남의 기대 효과

- 관세 철폐
 - EVFTA 발효 즉시 EU는 베트남 상품의 70.3%에 대한 관세(현행 세율: 85.6%)를 철폐하고, 7년 안에 99.2%에 대한 관세를 철폐할 예정
 - 외국인직접투자(FDI) 확대, 베트남의 對EU 수출규모 20% 확대 전망
- 베트남의 대표 산업인 섬유 의류 산업 중심 분석:



- 무관세 국가들(EU가입국, FTA 협정국, EBA, GSP+ 등 무관세 혜택국¹)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관세 혜택이 없는 중국의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EVFTA 발효시 현재의 관세율 즉시/단계별로 철폐 ➡ 베트남은 EBA, GSP+ 수혜 국가에 비해서는 기술력, 중국에 비해서는 무관세라는 강점을 누릴 수 있음

❖ EVFTA 주요 내용 - 원산지 규정 강화

- 원산지 결정 기준
 - 일반 기준과 품목별 기준으로 구분
 - 중국산 원자재 수입 범람 방지 목적 ➡ 여타 FTA에 비하여 원산지 관련 내용이 광범위하고 복잡
 - 협정문에서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통하여 품목별 기준을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
-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
 - 2018년 대베트남 섬유 원자재 수출 점유율 : 1위 중국(55%), 2위 한국(16%)²
 - EVFTA 협정 교차누적제도 : EU와 FTA를 맺고 있는 다른 국가에 대해서는 베트남과 동일한 무관세 혜택 적용
 - 중국과 달리 한국의 경우 EU와 FTA를 맺고 있음: 예컨대 베트남 기업이 중국산 원자재를 사용하면 9% 관세, 한국산 원자재를 사용하면 무관세 적용
 - 베트남 의류 업체들이 원자재 수입처를 한국으로 변경할 가능성 높음

❖ 시사점

- EVFTA 발효시 베트남 경제 활성화 및 우리 기업의 성장에도 긍정적 영향 기대
- 다만 EVFTA 협상 중 ILO의 요구에 따라 결사의 자유 및 단체 협상권의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노동법 개정이 예정됨 ➡ 임금 상승 등 노동 시장의 변화 예상
- EVFTA 관련 사항은 관세 관련 법규와 밀접한 연관 ➡ 다만 관세 관련 법규의 빈번한 변화, 품목별 원산지 기준 판단의 복잡성 등 탓으로 전문가 상담이 필수적임

1. EBA는 EU가 최빈국에게 제공하는 관세 면제 혜택으로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등이 해당되고, GSP+는 개발도상국에 대해 부여하는 관세 면제 혜택으로 파키스탄, 스리랑카 등이 해당됨

2. 2019. 8. 5자 어패럴뉴스, “EU-베트남 FTA 체결에 한국 섬유 반사 이익 기대” <http://www.apparelnews.co.kr/naver/view.php?id=77691>

Legal Update

Condotel 투자 : Green Light vs. Red Light?

❖ Condotel 투자의 잠재력

- Condotel : 콘도(Condominium)와 호텔(Hotel)의 합성어
- Condotel 투자 : 건설 회사 또는 부동산 관리 회사와의 계약을 통해 투자자가 필요시 직접 이용하거나, 이용하지 않는 경우 호텔 객실과 같이 임대 수익을 얻는 방식의 투자
- 베트남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폭발적인 성장 및 그로 인한 호텔 수요 증가, 베트남 국민의 소득 증가로 인한 세컨 홈(Second Home) 수요 증가,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에 따라 투자 관심 급상승

❖ Condotel 관련 법령 미비와 투자자 Risk

- Condotel은 베트남 내에서는 비교적 새로운 개념 → 베트남 법 체계상 Condotel의 정의나 관련 규정이 없고, 각 지역별 관할 기관마다 상이한 해석과 실무례를 보임
- 투자자 Risk 발생 사례
 - 주거용 토지에 Condotel을 건설, 분양하는 경우: 베트남법상 프로젝트의 기능은 토지 사용 목적과 일치하여야 함. 일부 시 성(市/城)의 경우 Condotel의 기능이 주거 및 상업용 포괄한다고 보고 Condotel을 운영하는 것을 불법으로 보고 있음(토지사용권증서(LURC)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동일)
 - 상업용 토지에 허가가 난 호텔/리조트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Condotel을 건설, 분양하는 경우: 베트남 주택법은 비주거용 토지에 주택을 건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지난 6월 다낭에서 상업용 토지에 Condotel을 건설한 회사(586 Company)가 베트남 주택법에 반한다는 이유로 다낭 인민위원회에 의해 발급되었던 주택용 red book(사용기간 무제한)을 박탈당하고 상업용 사용권(사용기간 제한: 39년)을 얻음.
 - 담보 대출 제약: Condotel 개발의 경우 토지임차료의 지급을 연납 방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베트남의 금융기관은 토지사용권이 아닌 지상 건물에 관한 담보 설정만 가능함. 일반 주거용 아파트의 경우 담보설정은 수분양자들의 LURC 발급 전까지만 가능함. 그런데 Condotel에도 주거용 성격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주거용 건물에 대한 법리와 같이 대주의 담보 설정이 Condotel 수분양자들이 LURC를 발급받기 전까지만 가능하게 될 가능성이 있음. 이와 같이 대주들의 담보권 범위가 제한되면 Condotel 개발에 있어서도 자금 조달이 어려울 수 있음

- Condotel 건설업체들은 투자자 유치를 위해 임대 프로그램을 통한 고수익률(연 8-12%)을 약속하는 경향이 있으나, 현재 건설업체들이 그러한 약속을 지키도록 할 수 있는 강제규정이 없어 투자자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이 있음

❖ 시사점

- 부동산 서비스업체인Colliers에 의하면, 올 2분기 다낭 Condotel 프로젝트의 평균 분양률은 불과 65%에 그침
- 위의 문제점들은 Condotel의 불완전 판매로 이어지고, 이에 따라 투자자의 혼란, 투자 불안정성 및 개발사의 자금난 등을 야기하여 전체적인 Condotel 투자 심리 악화에 기여
- 다행히 베트남 총리가 2019년 4월 23일 부동산 시장 발전을 위한 총리령(Directive No.11/CT-TTg)을 발표, 관련 부처들과 함께 2019년 3분기를 목표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세부 규정 초안을 만들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Condotel 문제 해결을 위한 관련 규정의 향방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관할부처	총리령이 각 부처에 위임한 초안 내용
건설부(MOC)	아파트, Condotel, 리조트 등의 건축 규정 및 기준의 개정
자원환경부(MONRE)	토지사용지침서 발표, 토지사용제도 개정에 관한 연구 실시, Condotel 등 신종 부동산에 대한 토지사용권 및 소유권의 발급
문화체육관광부(MOCST)	Condotel, 리조트, 빌라의 관리 및 판매에 관한 규정 제정

Legal Update

상장회사 주식 인수 시의 공개매수(Tender offer)

❖ 공개매수의 대상

-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25% 이상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 기관 또는 개인 및 그 관계인이 합산하여 상장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25%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추가로 유통되고 있는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10%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 기관 또는 개인 및 그 관계인이 합산하여 대상 상장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25%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추가로 이전 공개매수 완료일로부터 1년 내에 유통되고 있는 주식 5% 이상 10% 미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 공개매수의 예외

- 상장회사가 발행하는 신주 인수로 상장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25% 이상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 상장회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25% 이상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 모회사 관계에 있는 회사들 사이에서의 주식양수도의 경우
- 증여 또는 유증의 경우
- 법원의 판결에 따른 주식 이전의 경우

❖ 공개매수 시 유의점

- 공개매수의 조건은 상장회사의 모든 주주에게 동등하게 적용되고, 같은 종류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됨
- 전체 주식에 대한 공개매수를 진행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개매수로 상장회사의 주식 80% 이상을 취득하게 된 경우, 그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개매수와 동일한 조건으로 잔여 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매수해야 함
- 공개매수로 1년간 호치민 또는 하노이 증권거래소의 주식 분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상장폐지가 됨
 - 호치민 증권거래소 주식 분산 요건: 대주주를 제외한 나머지 300인 이상의 주주가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최소 20% 이상을 보유

- 하노이 증권거래소 주식 분산 요건: 대주주를 제외한 나머지 100인 이상의 주주가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최소 20% 이상을 보유
- 공개매수 가격은 기준가격의 상 하한가 변동폭 이내에서 결정되어야 하며, 이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베트남 증권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함

❖ 시사점

- 공개매수로 지배주주의 주식을 인수해야 하는 경우에 공개매수에 응하는 소액 주주에게도 지배주주와 동일하게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된 매수가격을 제시해야 하여 인수비용이 커질 가능성이 있음
- 지배주주의 주식을 분할 매수하여 일부 주식의 매수에는 공개매수 적용을 피하거나 지배주주가 상장회사 주주총회를 통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승인을 얻어 공개매수를 회피하는 주식을 매수하는 등 소액주주에 대한 경영권 프리미엄 지급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Legal Update

해외직접투자 외환관리 규정 강화

❖ 해외직접투자 외환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

- 2019년 6월 26일 베트남 중앙은행(“SBV”)에서 Circular No.06/2019/TT-NHNN(“Circular 06”)을 공표, 2019년 9월 6일 발효됨
- 위 Circular 06은 직접해외투자자본계좌(Foreign Direct Investment Capital Account, “DICA”)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간접해외투자자본계좌에 관한 Circular No.05/2014/TT-NHNN과 거주자 및 비거주자를 위한 외화 및 베트남동 계좌 개설에 관한 Circular No.16/2014/TT-NHNN에 대한 개정 사항을 함께 포함함

❖ Circular 06의 적용 범위

- DICA란? 베트남에서 이루어지는 해외직접투자 관련 거래를 위하여 해외직접투자법인 및 해외투자자가 개설한 외화/베트남동 표시 요구불계좌
- 적용 대상:
 - 해외직접투자법인 또는 해외직접투자법인에 투자한 해외/베트남 투자자
 - 경영협력계약(Business Cooperation Contract, “BCC”)의 당사자
 - 프로젝트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민관협력사업(Public Private Partnership, “PPP”)을 직접 수행하는 외국투자자
- 해외직접투자법인(Foreign Direct Investment Enterprise, “FDI Enterprise”):
 - 사원 또는 주주 전원이 외국인인 법인으로서 투자법에 따라 투자허가등록증을 취득한 법인
 - 정관자본금의 51%를 외국인 투자자가 보유한 법인으로서 (i) 출자 및/또는 주식 인수, 증자 (ii) 법인의 구조 변경(분할, 인수, 합병 등) (iii) 관련 법에 따라 설립된 신규 법인
 - PPP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인 투자자가 설립한 프로젝트 법인

❖ DICA의 개설 및 사용, 해지

- 1개의 인가은행에서 베트남 동화 표시 또는 외화 표시의 DICA를 각각 1개만 개설할 수 있음
- 종래 Circular 19에 따라 역내 대출로부터 외화 투자금(대출금)을 인출하는 것은 DICA 사용 범위에서 제외함

- 다음의 경우에는 DICA를 해지하고 간접투자자본금계좌를 개설해야 함:
 - 출자 및/또는 주식 인수, 증자 이후 외국인 투자자가 정관자본금의 51% 미만을 보유하는 경우
 - FDI 법인의 상장 또는 증권거래소에 등록된 경우

❖ 해외직접투자에서의 외환과 M&A

- DICA 계정을 통해야 하는 M&A 관련 거래:
 - 투자 자본금 관련
 - > 비거주자 또는 거주자 상호간의 거래는 DICA를 통하지 않아도 됨
 - > 비거주자와 거주자 간의 거래는 DICA를 통해 거래되어야 함
 - 출자 및/또는 주식 인수, 증자 이후
 - > 비거주자와 거주자 간의 거래는 DICA를 통해 거래되어야 함
- 가치평가 관련
 - 비거주자 상호간 거래는 외화로 진행하는 것을 허용
 - 비거주자와 거주자 간의 사이에서는 베트남동으로 해야.

❖ 시사점

- DICA를 개설하여야 하는 대상인지, 개설 관련 내용은 어디지에 관하여 파악할 필요가 있음
- 해외직접투자시 필수적으로 DICA를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관련 거래나 입출금에 앞서 DICA 사용 필요성에 관하여 전문가에게 확인하여야 함

Legal Update

Issuance of Bonds on the International Market

❖ Characteristics: What is International Bond?

- Nature: a foreign loan
- Currency: foreign currency (e.g. USD, KRW, JPY...)
- Par value: depends on the regulations of issuing market
- Listing (if applicable): on a Stock Exchange of the issuing market

❖ Conditions for issuance of International Bonds

- The issuer: joint stock company (“JSC”) / limited liability company (“LLC”)
- The conditions for issuance of foreign issuing market: must be satisfied
- Approval: the bonds issuance plan is approved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 Members’ Council (“MC”) of a LLC;
 -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GMS”) of a JSC; and
 - State Securities Commission (“SSC”) if the issuer is a JSC.
- The SBV’s confirmation 1: on the limit for issuance
- The SBV’s confirmation 2: on registration for issuance
- The purpose of issuance of International Bonds:
 - to implement the business plan or projects of the issuer or any company to which the issuer makes a direct capital contribution; and/ or
 - to restructure the foreign debts incurred by the issuer without increasing the loan expense

❖ Major conditions/required provisions for an international bonds subscription transaction

- Audit: Audited financial statements of the issuer for the latest 03 years
- Internal Approval: Meeting minutes and resolutions of MC/GMS describing approval with

the contents of transaction such as the bond issuance plan

- **Approval of Authorities:** SSC's approval, the SBV's confirmation
- **Rating:** Rating confirmation letter regarding the bonds from a rating service company
- **Satisfaction condition regarding foreign stock exchange market:** Written notification of issuance of bonds to the relevant stock exchange

❖ Restriction

- **Use of proceeds:** not to use for restructuring the domestic loans
- **Security method:**
 - Not to use land use rights as a security asset;
 - Listed shares shall not registered as a security method by the VSD (Vietnam Securities Depository)

News

세종소식

❖ [인사이동] 김철환 관세전문위원 하노이 상주



- 급변하는 한국-베트남 간 국제 통상 환경에 대응하고, 현지에서 베트남 진출 국내 기업의 고충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국내 로펌 중 최초로 베트남 주재 관세 통상 전문가 영입
- 김철환 관세전문위원은 국립세무대학 관세학과(12기)를 졸업하여, 관세청에서 약 15년간, 삼정회계법인 (KPMG) 등 외부 컨설팅 회사에서 약 7년간 재직하고 2017년 5월부터 법무법인 세종 국제통상그룹에 합류
- 관세심사, 일반조사, 외환조사 대응 및 글로벌 관세진단 등 다양한 관세 자문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베트남 진출 국내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수입 물품의 품목 분류, 이전가격, 로열티 지불 금액의 과세 여부, 원산지 판정 및 원산지 검증 등 각종 현안에 대한 자문 업무 담당

상기의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ontacts



길영민
파트너변호사 (호치민)
☎ +84-28-3827-4214
✉ ymgil@shinkim.com



김철환
관세전문위원 (하노이)
☎ +84-28-3827-4098
✉ chwankim@shinkim.com



박영수
파트너변호사 (하노이)
☎ +84-24-3245-4013
✉ ysupark@shinkim.com



정종대
변호사 (호치민)
☎ +84-28-3827-4514
✉ jdjung@shinkim.com



서예지
변호사 (하노이)
☎ +84-24-3245-4043
✉ yjiseo@shinkim.com



Tran Thi Bich Hanh
외국변호사 (하노이)
☎ +84-24-3245-4042
✉ tbhtran@shinkim.com



Phan Thi Hang
외국변호사 (호치민)
☎ +84-28-3827-4098
✉ thphan@shinkim.com



Nguyen Thi Minh Ngoc
외국변호사 (호치민)
☎ +84-28-3827-4099
✉ tmnnguyen@shinkim.com



Pham Quynh Trang
외국변호사 (하노이)
☎ +84-24-3245-4042
✉ qtpham@shinkim.com

SHIN&KIM | 법무법인 세종

법무법인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어떤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

서울 · 판교 · 베이징 · 상해 · 호치민 · 하노이